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022. 5. 16.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1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3
1. 세입·세출결산	3
2. 기금의 결산	5
3. 재무제표	6
4. 채권·채무결산	6
5. 재산의 결산	7
6. 금고의 결산	8
7. 성과보고서	9
III. 개선 및 권고사항	10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10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7
3. 기금에 관한 사항	47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53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55
6. 기타 사항	60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I.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5월 2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부산광역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하여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기금과 특별회계에 숨겨진 채무, 그리고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6,487,659	16,751,602	15,455,046	589,864 (6,087)	13,573	693,119
일반회계	12,968,088	13,251,840	12,277,395	365,886 (1,287)	13,567	594,992
공 기 업 특별회계	971,718	955,319	759,147	168,025	-	28,147
기 타 특별회계	2,547,853	2,544,443	2,418,504	55,953 (4,800)	6	69,980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나. 세입결산

2021회계연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6,487,659	17,027,835	461,530 (2.7)	16,751,602 (98.4)	72,196 (0.4)	204,037 (1.2)
일반회계	12,968,088	13,489,937	453,080 (3.4)	13,251,840 (98.2)	71,774 (0.5)	166,323 (1.2)
공 기 업 특별회계	971,718	964,317	4,816 (0.5)	955,319 (99.1)	146 (0.0)	8,852 (0.9)
기 타 특별회계	2,547,853	2,573,581	3,634 (0.1)	2,544,443 (98.9)	276 (0.0)	28,862 (1.1)

※ ()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다. 세출결산

2021회계연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6,052,394	16,487,659	15,455,046 (93.7)	595,951 (3.6)	33,718 (△20,145)	402,944 (2.4)
일반회계	12,734,988	12,968,088	12,277,395 (94.7)	367,173 (2.8)	33,189 (△19,622)	290,331 (2.2)
공 기 업 특별회계	826,621	971,718	759,147 (78.1)	168,025 (17.3)	-	44,546 (4.6)
기 타 특별회계	2,490,785	2,547,853	2,418,504 (94.9)	60,753 (2.4)	529 (△523)	68,067 (2.7)

※ ()내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비율이며, 보조금반납금()는 교부차액임.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6,751,602	15,455,046	1,296,556	589,864 (6,087)	13,573	693,119
일반회계	13,251,840	12,277,395	974,445	365,886 (1,287)	13,567	594,992
공 기 업 특별회계	955,319	759,147	196,172	168,025	-	28,147
기 타 특별회계	2,544,443	2,418,504	125,939	55,953 (4,800)	6	69,980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2. 기금의 결산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번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931,044	100,870	1,057,341	956,471	1,031,914
1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17,887	△15,378	500,791	516,169	2,509
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503	△453	1,949	2,402	1,050
3	집 단 에 너 지 시 설 기 금		32,069	221	1,421	1,200	32,290
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69,006	△6,484	40,988	47,472	162,522
5	투 자 진 흥 기 금		165,899	△9,670	23,084	32,754	156,229
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9,305	92	92	-	9,397
7	자 활 기 금		9,851	395	707	312	10,246
8	재 해 구 호 기 금		20,203	17,939	167,051	149,112	38,142
9	식 품 진 흥 기 금		13,367	1,254	2,176	922	14,621
10	환 경 보 전 기 금		13,931	987	3,172	2,185	14,918
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 민 지 원 기 금		664	257	3,606	3,349	921
12	재 난 관 리 기 금		21,142	59,029	96,935	37,906	80,171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75,054	8,714	17,188	8,474	183,768
14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4,673	△8,422	3,131	11,553	86,251
15	문 화 진 흥 기 금		93,061	11,715	60,516	48,801	104,776
16	체 육 진 흥 기 금		54,147	2,057	4,296	2,239	56,204
17	지 역 개 발 기 금		39,282	37,695	128,234	90,539	76,977
1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922	2,004	1,082	922

3.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결과
2021년	47,913,674	5,189,463	42,724,211	13,576,770	13,645,794	△69,024
2020년	46,801,851	4,560,385	42,241,466	12,733,416	12,880,358	△146,942
증감	1,111,823	629,078	482,745	843,354	765,436	77,918

4. 채권·채무결산

가. 채권

채권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 계			88,683	30,372	35,538	83,517	3,298	80,219
일반회계			51,921	9,693	15,457	46,157	3,298	42,859
특별회계	소계		21	-	3	18	-	18
	공기업특별회계		21	-	3	18	-	18
	기타특별회계		-	-	-	-	-	-
기금	소계		36,741	20,679	20,078	37,342	-	37,342
	중소기업육성		29,855	19,137	15,825	33,167	-	33,167
	투자진흥		700	702	1,402	-	-	-
	자활		910	455	980	385	-	385
	식품진흥		5,276	385	1,871	3,790	-	3,790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나. 채무

채무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B)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D)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920,957	306,512	838,340	531,828	-	3,227,469
지 방 채 증 권	2,265,538	183,966	619,850	435,884	-	2,449,504
차 입 금	648,713	128,262	217,500	89,238	-	776,975
채무부담행위	6,706	△5,716	990	6,706	-	990

※ 당해연도말 현재액(D) = 전년도말 현재액(A) + 당해연도 증감액(B) + 조정액(C)

5. 재산의 결산

가. 공유재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용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28,907,099	496,791	571,612	74,821	29,403,890
행정 재산	소 계	28,390,143	484,236	529,885	45,649	28,874,378
	공 용 재 산	11,041,011	103,103	109,965	6,862	11,144,114
	공 공 용 재 산	16,339,928	376,627	414,099	37,472	16,716,554
	기 업 용 재 산	936,644	4,506	5,821	1,315	941,150
	보 존 용 재 산	72,560	-	-	-	72,560
일 반 재 산		516,956	12,555	41,727	29,172	529,512

나. 물품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의 취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060	128,883	437	9,436	△1,339	△6,833	△902	2,603	4,158	131,486

※ 작성대상 물품 : 58개 정수물품(48종 정수물품 보유)

※ 미보유 정수물품 : 화물전기자동차, 조연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분무기탑재차 10종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7호(2021.8.4.)호에 따라 노트북컴퓨터 정수물품에서 삭제

6. 금고의 결산

2021회계연도 금고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2)	수입액(1)	지출액(2)	
합계(A+B+C)	2,095,256	2,693,982	17,808,943	16,411,517	2,328,470
일반회계소계(A)	854,282	974,445	13,251,840	12,277,395	974,445
특별회계소계(B)	309,930	322,111	3,499,762	3,177,651	322,111
공 기 업	199,847	196,172	955,319	759,147	196,172
기 타	110,083	125,939	2,544,443	2,418,504	125,939
기 금 소 계 (C)	931,044	1,397,426	1,057,341	956,471	1,031,914

7. 성과보고서

부산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8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현년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32	234	445	67	339	39	14,695,899	13,699,616	996,283

※ ‘초과달성’ 이란 목표대비 130% 이상 달성, ‘달성’ 이란 100%이상 130% 미만 달성, ‘미달성’ 이란 100% 미만의 달성도를 보인 경우로 구분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1)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지방세									
보통세	4,781,176	50,770	1.1%	4,544,328	45,161	1.0%	3,753,726	55,550	1.5%
목적세	591,742	10,998	1.9%	574,739	10,895	1.9%	525,994	11,446	2.2%
지난년도 수입	99,340	81,404	81.9%	122,352	80,862	66.1%	123,008	77,542	63.0%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3,132	289	9.2%	1,942	128	6.6%	2,304	499	21.7%
사용료 수입	56,679	2,261	4.0%	55,640	3,330	6.0%	66,801	2,580	3.9%
수수료 수입	23,397	252	1.1%	24,410	115	0.5%	25,151	599	2.4%
사업수입	35,443	11	0.0%	41,240	32	0.1%	21,447	46	0.2%
징수교부금 수입	4,639	-	0.0%	3,879	-	0.0%	5,647	-	0.0%
이자수입	9,208	113	1.2%	8,279	56	0.7%	10,171	13	0.1%
자산매각 수입	20,179	398	2.0%	37,972	-	0.0%	18,174	-	0.0%
지자치단체 간부담금	2,147	-	0.0%	2,501	48	1.9%	4,958	8	0.2%
과징금 및 과태료등	-	-	-	5,549	2,308	41.6%	4,658	1,615	34.7%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보조금 반환수입	80,675	2,409	3.0%	-	-	-	-	-	-
기타수입	69,842	1,358	1.9%	135,049	1,833	1.4%	101,569	3,178	3.1%
지난연도 수입	18,728	14,115	75.4%	18,235	14,119	77.4%	18,652	12,525	67.2%
과징금	320	40	12.5%	-	-	-	-	-	-
이행강제금	520	408	78.5%	-	-	-	-	-	-
변상금	2,934	1,216	41.4%	-	-	-	-	-	-
과태료	1,192	259	21.7%	-	-	-	-	-	-
환수금	38	9	23.7%	-	-	-	-	-	-
부담금	9	9	100%	-	-	-	-	-	-

전년도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과징금및과태료등’ 항목으로 하여 일괄 표시하였으나, 2021 회계연도부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을 새로이 신설하고 하부 항목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을 두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0년도 회계연도 미수납액 대비 6,25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또한 1,178백만원 증가하여 총 7,432백만원이(약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징수결정액의 증가로 인하여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2.8%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 비율이 81.9%로 전기 대비 15.8% 가량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세경정 등 경정청구에 의한 지난년도수입 환급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징수가능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무재산	33,083	19.89%	29,421	21.49%	30,501	21.10%
행방불명	2,828	1.70%	3,079	2.25%	3,214	2.22%
납세태만	30,741	18.48%	23,754	17.35%	30,092	20.82%
폐업또는부도	12,304	7.40%	8,921	6.52%	9,214	6.37%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415	0.85%	-	0.00%	-	0.00%
격리 또는 입원	4	0.0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690	1.02%	252	0.18%	367	0.25%
국외이주	85	0.05%				
자금압박	57,919	34.82%	54,953	40.14%	48,921	33.85%
기 타	21,093	12.68%	16,539	12.08%	22,226	15.38%
납기미도래	5,161	3.11%				
합 계	166,323	100.00%	136,919	100.00%	144,535	100.00%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 원인분석 결과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여건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존재하나, 납세태만의 요인은 과거 회계결산결과를 확인해보더라도 지속적으로 2~3순위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미수납액으로 인한 시 재정수입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타시도에 비하여 자금압박의 사유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등의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자동차 보유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자동차세의 자금압박에 따른 미수납액이 각각 3,358백 만원 및

9,827백만 원인 상황인데 채납자가 자산 및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채납처분 등의 절차로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 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거
에 발생한 세입 중 미수납액이 수납되거나 결손처분되지 않은채 누적된 결
과라 보여지므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시효 및 수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 미수납
액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세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1) 현황

부산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 62 규정에 따라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전체를 징수결의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산시의 세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귀속되는 지자체
로 해당 징수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이를 반환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반환처리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자치부, 2016.6.23.)
2021년 정산대상인 세입수입은 약 3,454억원이고 환급처리된 금액은 약
2,95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전체 환급액은 453,080백만원이고, 그 중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361,709백 만원으로 그 비중은 79.8%이며, 이는 부산
시에 본점을 소재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으로부터 선납하는 지방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부산시가 특별징수한 후 각 시도 지자체로 정산하여
환급해주는 구조에 따라 지방소득세에서 유독 큰 금액의 환급액이 발생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는 비록 부산시가 타 시도 지자체의
지방소득세를 대신 징수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그 보유기간동안의
이자금액을 수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의 수납총액이 5,259,962백만원이며 이중 8.3%가량이 환급되고 있으므로 부
산시와 관계가 없는 지방소득세 수입이 과도하게 세입으로 인식되고 또한

상당한 금액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대한 수익부분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므로 현행 정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부산시에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득세(법인정산대상 금액)는 세입과 반환금은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예탁결제원 정산대상 금액 및 정산금액을 참고로 명시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 그외수입에 관한 사항

1) 현황

2021년 회계연도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7,936백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91,572백 만원의 35.4%에 달할 정도로 금액이 상당하며, 2020년도에도 80,42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의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각종 단체 및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또한 보조금반환수입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그외수입'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는 등 그외수입 처리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서의 특성상 예산편성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오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의 경우 그외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등 오류의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 회계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예산과목별 세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점검기간 설정 등 세입과목 오류처리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수입 항목은 정보이용자가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항목으로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그외수입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세입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 현황

지방세 세입은 징수액이 결정되고 징수부과 후 징수로 인하여 과세권이 종결되고 부산시의 수입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부산시의 세입결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미수납금액 발생하는 경우 각 미수납 사유별로 금액을 집계하고 사후적으로 징수활동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과세권이 없어질 경우 불납결손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결손처분이 크게 발생하여 결손처분 금액이 2020년도 대비 36,374백만원 증가한 71,77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결손처리를 한 후에도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2021년도 결손취소 후 징수금액은 6,292백만원으로 2020년도 4,656백만원 보다 1,636백만원 (35.7%)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1년		202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배분금액부족	3,326	4.63%	2,077	5.87%
체납처분중지	176	0.25%	129	0.36%
시효소멸	3,042	4.24%	2,389	6.75%
행방불명	602	0.84%	693	1.96%
무재산	56,136	78.21%	21,737	61.40%
채무자회생법에의한 면제	142	0.20%	15	0.04%
평가부족액	8,288	11.55%	8,360	23.62%
기타	62	0.09%		
합 계	71,774	100.00%	35,400	100.00%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처분 원인분석 결과 무재산, 평가부족액, 배분금액부족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결손처분 후 징수금액은 전년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 결손처분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사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수가능한 채권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채납자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담보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징수기법의 도입을 위하여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채권보전 절차를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5)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관한 사항

1) 현황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의 징수결정액과 환급결정액을 확인한 결과 54,024백만원의 징수결정액과 1,060백만원의 환급결정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10,093백만원(23.0%) 환급결정액은 900백만원(559%)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의 경우 부산광역시 소재 구·군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집행한후 정산과정을 거쳐 반환되는 금액을 시·도비 반환금수입 항목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적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의 경우 선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하여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축소 및 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반환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하여 총 금액이

5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보조금의 지출이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급결정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는 보조금환급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을 제외한 부분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잘못 처리하여 수정한 부분으로 그 금액이 전년도 대비 900백만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전년도까지는 기타수입(224)항의 하부 항목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을 관리하였으나, 2021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반환수입(223)항을 신규로 신설할 정도로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반환수입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일 것을 권고 드립니다.

(6)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

1) 현황

2021. 3. 29. 부산세관에서 하이낙 유탄회사가 2018. 1. 5.~2019. 12. 2. 니코틴용액 33,506,439ml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부산시는 2021. 4. 30 납부일자로 하여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각 가산금 등 총 39,357백 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합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합계
		29,407	9,950	39,357
본	세	21,042	9,256	30,298
가	산	6,313	-	6,313
가	산	금	278	1,099
중	가	산	금	1,647

하지만 하이낙 유한회사는 2020. 12. 31. 폐업신고, 2021. 4. 13.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으며 법인 소재지의 현장 확인 결과 이미 다른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등 법인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인 박현수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며, 최대주주이자 2차 납세의무자인 중국인 판슈에리엔의 외국인등록번호 조차 확인할 수 없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 전액(39,375백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그 결과 결손처분 금액이 전년도 35,400백 만원에서 71,774백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의 통보를 해당 업체가 폐업 및 해산 등기 후 받았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납기일 전 청산종결이 이루어진 만큼 체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담배소비세의 징수결정액이 228,671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사업법에 따른 등록업체를 파악하여 해당 업체의 매출액과 수입통관된 금액의 대사를 통해 수입 사실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도 주기적인 긴밀한 업무 협조(정기적 방문, 직원 수시 상주 등)를 통하여 본 사건과 같이 관세조사 및 처분 사실 통보를 받은 후 담배소비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관세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채권보전 절차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형식적으로 하이낙 유한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 변동 현황만을 파악하거나, 개인정보법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판슈에리엔의 외국인등록번호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탈피하고 세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형사 고발을 고려하거나, 관세청 등에서 형사 고발 사실여부 및 진행과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나.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현액(A)	12,968,088	11,852,367	9,827,683	9,141,496	8,761,656
세출결산액	12,277,395	11,495,801	9,445,026	8,740,233	8,342,800
이 월 액(B)	367,173	233,100	240,398	268,785	344,233
증감액	134,073	-7,298	-28,387	-75,448	12,587
비 율(B/A)	2.83%	1.97%	2.45%	2.94%	3.92%
보조금반납금(C)	33,189	55,121	20,419	16,823	2,176
증감액	-21,932	34,701	3,596	14,647	-6,363
비 율(C/A)	0.26%	0.47%	0.21%	0.18%	0.02%
집행잔액(D)	290,331	68,345	121,840	115,655	72,447
증감액	221,986	-53,495	6,185	43,208	-38,955
비 율(D/A)	2.24%	0.58%	1.24%	1.26%	0.82%
계(E=B+C+D)	690,693	356,566	382,657	401,263	418,856
비율((E)/A)	5.33%	3.01%	3.89%	4.38%	4.78%
순세계잉여금	594,992	620,232	175,760	160,838	188,884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115,721백만원(9.41%)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81,594백만원(6.80%)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94,99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240백만원 감소하였고,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348,141백만원 대비 246,85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290,332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24%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1.23%에 비해 1.0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년도(0.58%) 대비 1.6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당초예산		10,341,851	9,708,815	8,825,587
제1회 추경예산	증감	1,001,622	224,996	518,098
	계	11,343,473	9,933,811	9,343,685
제2회 추경예산	증감	816,482	1,005,487	215,871
	계	12,159,955	10,939,298	9,559,556
제3회 추경예산	증감	532,537	409,735	-15,169
	계	12,692,492	11,349,033	9,544,387
제4회 추경예산	증감	-	236,129	-
	계	-	11,585,162	-
간주예산	증감	42,496	26,807	14,511
	계	12,734,988	11,611,969	9,558,898
최종예산		12,734,988	11,611,969	9,558,898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123.14%	119.60%	108.31%

회계연도별로 매년 3회 이상 당초예산의 변경이 있었으며, 최종예산은 당초 대비 23%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액의 흐름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세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3회 이상의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당년도의 세입 및 세출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년도 간주예산 처리액은 전년도 대비 15,68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 예산 21,000백만원을 연말시점에 간주처리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94,99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240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348,141백만원 대비 246,851백만원(72.36%)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한 이유는 본 예산 수립 시 세입 규모를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지출잔액 과다 편성 및 발생도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부산시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시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바, 이때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진행과정 및 투자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세출과 그와 관련된 필요한 세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연간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 당초예산의 세출로 편성하고 이후에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일부의 사업은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중단 및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연간 사업별 필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투

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도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철저한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최소화하여야 세입과 세출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간주예산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주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될 수 있고, 의회에는 서면보고 형식에만 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의 간주처리 전에 지방의회에 충분한 예산정보를 제공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주예산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로건설 사업 등 공기가 긴 사업보다는 사업기간이 단기인 사업에 간주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명시이월	225,062	147,633	142,298	122,271	162,838
증감액	77,429	32,915	20,027	-40,567	-21,315
사고이월	78,740	72,218	73,659	100,460	140,901
증감액	6,522	-1,441	-26,801	-40,441	20,081
계속비이월	63,371	13,249	24,440	46,054	40,494
증감액	50,122	-11,191	-21,614	5,560	13821
합 계	367,173	233,100	212,817	268,785	344,233
증감액	134,073	20,283	-28,388	-75,448	12,587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77,429백만원, 6,522백만원, 50,12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건수 및 자금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년(A)			2020 년(B)			증감(A-B)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명시	148	224,062	1,000	113	124,912	22,721	11	10,194	-4,859
사고	132	78,453	287	144	71,830	388	11	-1,829	388
계속비	9	63,371	-	7	13,249	-	-4	-11,191	-
합계	289	365,886	1,287	264	209,991	23,109	18	-2,826	-4,471

당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금을 수반하는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나 자금없는 이월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전년대비 발생건수 및 금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의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온천5호 교 재가설 공사, 서면~사상 도시BRT구축 지원,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연근해어선감척,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공사,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요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유
도시균형개발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	42,455	22,237	6,779	보상협의 지연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가지원)	21,000	21,000	-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
도로계획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35,074	19,175	-	문화재 정밀발굴 등으로 공정지연
도로계획과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17,195	16,400	-	3회 추경 반영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직접)	22,815	1,000	13,190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
기후대기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50,080	5,033	9,005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
버스운영과	서면~사상 도시BRT 구축 지원	11,951	10,141	264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공공교통정책과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13,022	5,240	3,323	사전절차 지연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9,392	7,915	-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
문화유산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2,876	3,443	4,236	사전절차 지연
지산학협력과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10,334	7,332	-	3회 추경 반영
버스운영과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320	3,798	3,484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도시철도과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7,000	7,000	-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
자원순환과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27,468	5,000	1,958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소방행정과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8,784	6,300	399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제조혁신과	수소버스 보급사업	8,100	6,000	-	수소버스 제작 지연에 따른 이월
도로계획과	문전교차로 지하차도건설	12,601	5,696	277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창조도시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영도)(경제공동체)	8,100	5,338	-	준공시기 미도래
창업벤처과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9,482	-	5,276	준공시기 미도래
버스운영과	서면~충무 도시BRT구축 지원	24,163	4,835	245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는 큰 변화가 없으며, 주로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2021년	66건	4,589,485	1,105,636	153,394	274,861	86,450	514,705
2020년	64건	4,506,107	1,256,638	146,693	189,211	4,808	340,712
2019년	54건	4,051,157	1,098,509	103,923	211,412	2,000	317,335
2018년	49건	3,469,723	1,419,598	145,873	216,173	18,509	380,555
2017년	47건	3,078,492	1,358,845	147,654	173,498	53,060	374,213

2021년도의 장기사업 중 완료는 10건, 총사업비 143,094백만원이며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건, 총사업비 614,537백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으며,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 소요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및 지출원인 행위 후 지출액의 과소로 이월되는 것은 매년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확보 후 1년간 명시이월 후 그 다음연도에 다시 1년간 사고이월을 하여 관습적인 이월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시 연말에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집행사유 미발생	2,324	0.80%	8,417	12.32%	36,488	29.95%
증감액	-6,093	-72.39%	-28,071	-76.93%	24,952	216.30%
예산절감	30	0.01%	11	0.016%	1,104	0.91%
증감액	19	173%	-1,093	-99%	1,029	1372.0%
낙찰차액	1,734	0.60%	898	1.31%	992	0.81%
증감액	836	93.10%	-94	-9.47%	992	-
지출잔액	93,872	32.33%	36,218	52.99%	40,961	33.62%
증감액	57,654	159.19%	-4,743	-11.58%	3,302	8.77%
보조금 정산잔액	5,441	1.87%	4,326	6.33%	10,121	8.31%
증감액	1,115	25.77%	-5,795	-57.26%	-10,722	-51.44%
예비비	186,930	64.39%	18,475	27.03%	32,174	26.41%
증감액	168,455	911.80%	-13,699	-41.87%	-13,368	-29.35%
합 계	290,331	100.00%	68,345	100.00%	121,840	100.00%
증감액	221,986	324.80%	-53,495	-43.91%	6,185	5.35%

당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90,33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986백만원(324.80%) 증가하였습니다.

당년도의 집행잔액 증가는 예비비 및 지출잔액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감소하였습니다. 당년도의 집행잔액 증가는 전년 대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증가에 기인하며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 잔액은 일반예비비 110,930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6,0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지출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세부사업 189,599백만원, 특별회계 15개 사업 53,424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예산담당관	예비비	110,931	110,931	100.0
예산담당관	예비비	76,000	76,000	100.0
교육협력과	예비비	25,473	25,473	100.0
원자력안전과	예비비	5,258	5,258	100.0
공공교통정책과	예비비(도시교통분야)	4,920	4,920	100.0
도시철도과	예비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44	4,744	100.0
복지정책과	예비비	3,260	3,260	100.0
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2,717	2,717	100.0
소방행정과	예비비	2,461	2,461	100.0
건설행정과	예비비	1,783	1,783	100.0
공공교통정책과	예비비(주차분야)	1,648	1,648	100.0
미래에너지산업과	공급시설 관리운영 예비비	719	719	100.0
도로계획과	식만~사상 혼잡도로	600	600	100.0
도시철도과	내부거래지출	500	500	100.0
하천관리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300	300	100.0
시설계획과	예비비	217	217	100.0
외교통상과	집중관리 국외여비	200	200	100.0
예산담당관	기관운영	150	150	100.0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	113	113	100.0
물류정책과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101	101	100.0
시민방역추진단	인력운영비(결핵관리 의사)	89	89	100.0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77	77	100.0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70	70	100.0
농축산유통과	방역장비 등 지원	65	65	100.0
체육진흥과	시장배 시민바둑대회 개최	64	64	100.0
아동보호종합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9	59	100.0
버스운영과	예비비(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56	56	100.0
문화예술과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50	50	100.0
하천관리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50	50	100.0
공항기획담당관	부·울·경 신공항 건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	34	34	100.0

당년도의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의 32개 세부사업 27,999백만원에 비하여 161,60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집행잔액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의 관행적 편성, 편성된 예산의 소극적 집행, 추경시 적절한 감액결정 누락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최초예산 편성 시 과거의 집행잔액 발생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예산의 예측과 사용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당해연도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H=D+E+F +G)	비율 (H/A)
	보조금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명시 이월 (E)	사고 이월 (F)	계속비 이월 (G)		
2021년	5,771,974	5,535,802	229,360	6,812	10,287	1,253	-	18,352	0.32
2020년	5,656,003	5,523,945	107,460	24,598	8,736	96	233	33,663	0.73
2019년	3,765,255	3,655,793	82,970	26,492	7,439	1,032	-	34,963	0.93
2018년	3,043,385	2,983,680	48,199	11,506	15,024	1,594	-	28,124	0.92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7,786백만원 감소한 6,812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해연도 보조금수령액은 115,97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집행금액은 11,857백만원 만큼 증가하면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이 전기대비 약 2.1% 증가할 동안 대비 보조금집행잔액은 전기대비 약 72.3% 감소하면서 보조금 수령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기대비 약 4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일반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2021년	2,948	10,024	594	-	13,566
2020년	15,232	8,557	36	233	24,058

당년도의 반납해야하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0,49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반납하는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수령액 (국비)	수령액 (시비)	계	미집행액	비율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12	-	12	12	100.00%
시민방역추진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직접)	11	-	11	11	100.00%
자치분권과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구축	32	-	32	32	100.00%
제조혁신과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보조)	17,325	-	17,325	9,315	53.77%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400	-	400	267	66.75%
공원운영과	환경교육문화사업	52	-	52	52	100.00%
산림녹지과	청소년체험숲 조성	740	-	740	400	54.05%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직접)	1,037	-	1,037	1,037	100.00%
산림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	85	-	85	71	83.53%
해운항만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수영만)(보조)	7,500	-	7,500	6,918	92.24%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직접)	943	-	943	312	33.09%
자원순환과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10	-	10	10	100.00%
복지정책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177	-	177	83	46.89%

2) 개선 및 권고사항

당년도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3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 기존 사업을 재조정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여건 및 사업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결과도 보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의 검증 미비

1)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법 제17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 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3억원 이상 부산시 지방보조사업 중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부산시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은 2021년 7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은 집행과 정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지방보조금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 첫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를 받음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¹⁾는 총액이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²⁾는 총액 10억 이상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계감사를 받았다하여 검증보고서에 대한 면제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신설된 지방보조금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규

1)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2) 지방보조금법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일선에서 혼선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서는 지방보조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관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검증보고서나 회계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2021회계연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건)

구 분	2021		2020	
	공사금액	공사건수	공사금액	공사건수
총계약금액	318,064	1,324	238,604	1,415
수의계약금액	54,900	1,140	30,064	1,199
수의계약비율	17.26%	86.10%	12.60%	84.73%

당년도의 수의공사 계약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로서 공사계약은 2억에서 4억으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의공사 계약금액 기준이 상향되어 수의계약 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수의계약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운영이 지방계약법 및 관련예규에 따라 적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타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시스템 운영, 수의계약시 요청사유서 징구, 5회이상 수의계약 홈페이지 의무적 공개 등 수의계약 추진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공사 수의계약내역을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최초 계약금액에서 증액되어 계약된 금액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최초계약금액 대비 차이 비율이 높은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약부서	계약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 금액	차이 금액	최초계약금액 대비차이율
북구재무과	울리역 일원 외 1개소 횡단보 도 신설 전기공사	11,100	28,679	17,579	158.37%
푸른도시가 꾸기사업소	월드컵로 도시바람길숲 전기 공사	36,035	75,251	39,216	108.83%
건설본부	어린이대공원 매점 리모델링 건축공사	116,437	238,086	121,649	104.48%
사하구재무 과	장림공단~동원로알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건물철거) 공사	111,912	200,882	88,970	79.50%
푸른도시가 꾸기사업소	아시아드로 도시바람길숲 전 기공사	29,223	48,189	18,966	64.90%
남구재무담 당관	부산광역시 방범용 14단계 구 축공사	18,600	30,401	11,801	63.45%
남구재무담 당관	(공사)대남지하차도 누수발생 구간 주변 정비공사	55,264	87,800	32,536	58.87%
사하구재무 과	다대동 꽃마름 일원 보도설치 공사	31,970	46,990	15,020	46.98%
회계재산담 당관	송정터널 LED조명 교체공사 계약 의뢰	86,978	119,955	32,977	37.91%
회계재산담 당관	청소년공작소 설치 건축공사	83,174	113,623	30,449	36.61%
낙동강관리 본부	화명생태공원 수로 유지관리 공사	44,200	58,372	14,172	32.06%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될 수 있어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절차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과 다르게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계약의 경제성뿐

만 아니라, 공공성 및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계약사례는 최초 계약금액에서 최종 계약시 금액이 증액된 사례로서 과업물량 증가와 단가변경으로 인한 증액요청,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부서들간의 협의부족 외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과 상이한 것이 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공사와 관련한 변수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시에는 각 발주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하지 못할 변수에 대비하여 원가계산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만큼 원가 산정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외 수의계약 지양

1) 실태와 문제점

부산시는 2021년 및 2020년 민간과 진행한 용역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율
총용역합계	거래건수	2,395건	2,199건	8.91%
	거래금액	909억원	827억원	9.92%
수의계약합계	거래건수	2,188건	1,991건	9.89%
	거래금액	338억원	303억원	11.55%
관외수의계약	거래건수	280건	262건	6.87%
	거래금액	65억원	66억원	-1.52%

2021년 총 용역건수 2,395건 계약금액 909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민간업체와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의계약은 2,188건(총 계약건수 比 91%), 계약금

액 236억원(총 계약금액 比 37%)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수의계약 시 홈페이지 공개 : 기존 연간 5회 이상 → 매 5회마다 공개
- ▷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징구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부산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비중은 2020년 86.8%, 2021년 87.2%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업종 직접 지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관외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거래건수는 11% 증가한 수준이며 관외 수의계약 건별 비중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시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1년 부산시 관외 용역 수의계약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 용역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 적합한 관내업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1) 결산액과 잔액증명서의 대사

2021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은 125,939백만원으로서, 이는 부산광역시금고 보관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2)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의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세입결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비율 (C/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①)	2,317,621	2,343,163	2,313,898	99.84%	480	28,785
당해연도(②)	2,547,853	2,573,581	2,544,443	99.86%	276	28,862
전년도比 (②-①)	230,232	230,418	230,545	0.02%p	-204	77
증감률(%) [(②-①)/①*100]	9.93%	9.83%	9.96%	0.02%	-42.50%	0.27%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6%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99.84%보다 0.0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2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금액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402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538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13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2>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추세를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세입은 9.96%, 세출은 9.74%, 잉여금은 14.40% 증가하였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5개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세 입		2,544,443	2,313,898	2,289,140	2,008,721	1,926,082
세 출		2,418,504	2,203,815	2,093,895	1,866,469	1,809,021
잉여금	소 계	125,939	110,083	195,245	142,252	117,061
	이월금	55,953	53,349	91,140	39,869	37,163
	보조금 실제반납금	6	74	3,053	236	37
	순세계잉여금	69,980	56,660	101,052	102,147	79,861

본 회계연도 수납액은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230,545백만원 증가한 것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두역특별회계,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경륜사업특별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소방사업특별회계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회계연도의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2,547,853백만원보다 3,410백만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는데, 회계별로는 16개 기타특별회계 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사업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서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서 부족하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표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비율
2021년	2,547,853 (57,068)	2,573,581	2,544,443	276	28,862	98.87%
2020년	2,317,621 (91,140)	2,343,163	2,313,898	480	28,785	98.75%
2019년	2,258,742 (49,186)	2,321,212	2,289,140	458	31,614	98.62%
2018년	1,976,797 (37,163)	2,049,999	2,008,721	149	41,129	97.99%
2017년	1,927,991 (45,014)	1,959,734	1,926,082	500	33,152	98.28%

본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77백만원 증가한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표4〉 이월된 미수납액의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실제수납액 (가) (나)+(다)	현년도 수납액 (나)	과년도 수납액 (다)	(다)/전년미수납 이월액 비율
2021년	2,544,443	2,538,841	5,602	19.5%
2020년	2,313,898	2,303,178	10,720	33.9%
2019년	2,289,140	2,268,363	20,777	50.5%
2018년	2,008,721	1,996,810	11,911	35.9%
2017년	1,926,082	1,914,206	11,876	36.1%

아래의 〈표5〉는 지난년도 미수납액 관리실태로 교통, 광역교통,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94.08%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사유는 납세태만과 납기미도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표5〉 미수납액 관리실태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	사 유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자금 압박	납기 미도래	기 타
집단에너지	38	-	-	38	-	-	-	-
교통사업	8,538	666	266	7,012	71	389	134	-
광역교통	15,402	-	-	7,323	-	-	8,079	-
유료도로	1,618	-	-	-	-	-	-	1,618
소방사업	53	21	-	28	-	3	-	1
학교용지부담금	3,213	-	-	-	-	3,213	-	-
합 계	28,862	687	266	14,401	71	3,605	8,213	1,619

2) 개선 및 권고사항

① 미수납액 관리

이월 미수납액의 현황을 〈표4〉, 〈표5〉와 같이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미수납액을 차년도에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2019회계연도까지는 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이었으나, 2020회계연도에 수납률이 감소하였고 올해 소폭 개선되어 향후에도 징수 열의를 갖고 미수납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하는 학교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재원을 운용하는 회계단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2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0,49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2,500백만원으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이가 약37,996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요 세입재원은 공동주택 분양시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세출사업인 학교용지매입은 즉시 이뤄지지 않아 년도말 결산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증축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 교육청과 부산시의 분담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예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는 바 세입과 세출 예산의 균형있는 편성 또는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③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차고지조성특별회계의 경우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국비(30%, 약46억원)를 지원받기 위해 시비 약 114억원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부산시에 필요한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나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보다 약 70억원이 많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비예산을 매칭하기 위하여 지방채 15억원 발행하는 것은 이자비용을 발생시켜 지방재정의 지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수적인 비용이 발행하지 않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건설허가시 부담금을 부과(납부기간 1년)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은 11,959백만원이고 실제수납총액은 3,881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8,078백만원으로 매우 많으며 해당 미수납액 중 7,323백만원은 납세태만사유에 의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준공시점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금이 해당 금액을 차입하여 준공시점까지 보유할 경우의 기간이자보다 낮음에 따라 납부를 의도적으로 미루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미납에 대한 행정제재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나.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의 5년간 결산 추세는 <표1>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비율 1과 비율 2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비율 1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편성과 지출의 합리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기 이후의 세출예산 편성과 예비비 책정에 반드시 준거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수치이며, 비율 2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입니다.

비율 1은 2019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율 2는 역시 2017년부터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세출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계획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표1〉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연도	A 예산현액	지출	B 이월	C 집행잔액	비율 1 C/A	비율 2 (B+C)/A
2021년	2,547,853	2,418,504	60,753	68,067	2.7%	5.1%
2020년	2,317,621	2,203,815	57,069	56,738	2.4%	4.9%
2019년	2,258,743	2,093,895	91,140	73,708	3.3%	7.2%
2018년	1,976,797	1,866,469	49,186	61,142	3.1%	5.6%
2017년	1,927,991	1,809,021	37,163	81,807	4.2%	6.1%

한편 16개의 각 특별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잔액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32	719	1,251
경륜사업						0
의료급여기금				243	3,260	3,503
교통사업		3	11	805	6,568	7,387
광역교통시설				8,654	33	8,687
공영차고지조성사업				56		56
도시철도사업				5,375	-	5,375

구분	집행잔액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 변경 등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135	-	135
유료도로					1,783	1,783
원자력발전지역개발				5,739	-	5,739
재정비촉진					2,717	2,717
기반시설부담구역					217	217
화력발전지역개발			2	3	22	27
소방사업	6	6		3,238	2,461	5,711
학교용지부담금				2	25,473	25,475
국민주택사업					4	4
합계	6	9	13	24,782	43,257	68,067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주로 지출잔액 및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설정된 상황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설정기준을 초과한 것에 기인합니다.

〈표3〉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초과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예비비 설정한도(1%)	예비비	초과액	초과율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4,412	244	719	475	195%
교통사업	115,961	1,159	6,568	5,409	467%
유료도로	35,429	354	1,784	1,430	404%
재정비촉진	20,717	207	2,717	2,510	1,213%
기반시설부담구역	617	6	217	211	3,517%
화력발전지역개발	1,814	18	23	5	22%
학교용지부담금	37,975	379	25,473	25,094	6,621%

2) 개선 및 권고사항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예비비 편성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월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최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예비비를 설정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바 예비비 편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경 편성시 감액 등 예비비 관련 예산을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에 반영하는 등 세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별회계에 반영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등 세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현황 및 문제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회계단위입니다.

현재 사상환승센터 건립사업과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잔액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출잔액	사 유
사상환승센터 건립사업	39.5억원	세출예산 130억원 중 5.5억원 지출, 85억원 이월 후 잔액임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사업	27억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44.4억원 17억원만 징수결정함에 따른 불용처리분
합 계	66.5억원	

시설비 세출예산현액은 33,787백만원, 당해 지출액은 12,602백만원, 이월액은 6,64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4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 중 사상환승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약 39.5억원을 불용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김해 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17억만을 수령하고 약 2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세출역시 27억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은 최대한 필요한 것에 편성되어 목적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세출 역시 적정하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소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수령 등을 예상하여 세입을 과도하게 설정함에 따라 세출 역시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 국비가 승인되지 못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이 불용처리되고 사업이 지체됨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나는 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지출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기금에 관한 사항

(1) 기금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과 전년도 말 조성액의 합계액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과 사용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년도중 조성액(B)	당년도중 조성총액 (C=A+B)	당년도중 사용액(D)	사용비율 (E=D/C)	당해연도말 조성액 (F=C-D)
계	931,044	1,057,341	1,988,385	956,471		1,031,914
통합관리기금	17,887	500,791	518,678	516,169	99.5%	2,509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503	1,949	3,452	2,402	69.6%	1,050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2,069	1,421	33,490	1200	3.6%	32,290
중소기업육성기금	169,006	40,988	209,994	47,472	22.6%	162,522
투자진흥기금	165,899	23,084	188,983	32,754	17.3%	156,229
남북교류협력기금	9,305	92	9,397		0.0%	9,397
자활기금	9,851	707	10,558	312	3.0%	10,246
재해구호기금	20,203	167,051	187,254	149,111	79.6%	38,142
식품진흥기금	13,367	2,176	15,543	922	5.9%	14,621
환경보전기금	13,931	3,172	17,103	2,185	12.8%	14,918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664	3,606	4,270	3,349	78.4%	921
재난관리기금	21,142	96,935	118,077	37,906	32.1%	80,1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75,054	17,188	192,242	8,474	4.4%	183,768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4,673	3,131	97,804	11,553	11.8%	86,251
문화진흥기금	93,061	60,516	153,577	48,801	31.8%	104,776
체육진흥기금	54,147	4,296	58,443	2,239	3.8%	56,204
지역개발기금	39,282	128,234	167,516	90,539	54.0%	76,977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2,004	2,004	1,082	54.0%	922

기금별 과거3개년 사용비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과거3개년 기금별 사용비율 현황

연 번	기 금 명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1	통 합 관 리 기 금	99.5%	96.63%	99.57%
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69.6%	65.97%	56.27%
3	집 단 에 너 지 시 설 기 금	3.6%	0%	0%
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2.6%	18.07%	16.12%
5	투 자 진 흥 기 금	17.3%	5.54%	5.08%
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0.0%	0.03%	4.13%
7	자 활 기 금	3.0%	3.79%	4.06%
8	재 해 구 호 기 금	79.6%	85.60%	0.4%
9	식 품 진 흥 기 금	5.9%	13.90%	15.06%
10	환 경 보 전 기 금	12.8%	23.11%	28.18%
11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78.4%	82.55%	80.1%
12	재 난 관 리 기 금	32.1%	83.07%	27.29%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4%	5.54%	5.5%
14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11.8%	10.48%	10.41%
15	문 화 진 흥 기 금	31.8%	20.44%	8.07%
16	체 육 진 흥 기 금	3.8%	10.86%	4.09%
17	지 역 개 발 기 금	54.0%	75.33%	69.1%
18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54.0%	-	-

기금의 설치사유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과거 3개년간 사용비율 현황을 보면 집단에너지시설기금, 투자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사용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표3〉 기금예치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당해연도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기업 자유예금	통합관리 기금
통합관리기금	2,509	1,465	0	1,044	0	0	0
대학및지역인재 육성기금	1,050	0	0	1,050	0	0	0
집단에너지시설 기금	32,290	0	0	1,334	0	0	30,956
중소기업육성기금	162,522	0	0	6,895	11,810	0	143,817
투자진흥기금	156,229	0	0	15,839	0	0	140,390
남북교류협력기금	9,397	2,722	0	1	0	0	6,674
자활기금	10,246	0	0	2,313	0	0	7,933
재해구호기금	38,142	14,895	137	23,110	0	0	0
식품진흥기금	14,621	0	0	0	3,621	0	11,000
환경보전기금	14,918	0	0	2,218	0	0	12,7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921	0	0	921	0	0	0
재난관리기금	80,171	15,000	22	65,149	0	0	0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83,768	21,500	0	3,089	0	0	159,179
출산장려및양성 평등기금	86,251	1,536	10	11,179	0	0	73,526
문화진흥기금	104,776	5,444	3	39,185	0	0	60,144
체육진흥기금	56,204	3,901	0	1,345	0	0	50,958
지역개발기금	76,977	0	0	0	76,977	0	0
관광마이스육성 진흥기금	922	0	0	922	0	0	0
합계	1,031,914	66,463	172	175,594	92,408	0	697,277
예치비율	100%	6.44%	0.02%	17.02%	8.96%	0.00%	67.57%

과거 지출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운영을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여유자금을 운영 하는 것으로 잘 개선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금은 해당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18개 기금은 그 자체의 고유목적보다는 통합관리기금(지방채상환 및 타기금의 효율적 관리목적의 기금)으로 상당부분이 예수탁금 형식으로 편입되며, 통합관리기금은 다시 내부거래방식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 예수탁금 형식으로 전출입됩니다.

전체 기금운용체계가 통합관리기금 이외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의 보조기금적 역할이 우선이고 고유목적 역할은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비중과 역할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나머지 기금은 존재의 의미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의 운용면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금들은 사용을 늦게 할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비율이 비교적 저조하며 기금별, 연차별 사용추이도 장기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기금조성의 기본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금보관시스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청의 115억원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산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2019년부터 발생한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금액은 입출금액이 이호조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공예금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현재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지역개발기금 정도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보통예금 또는 보통예금을 병행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을 공공예금 등과 같이 입출내역이 전산과 연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금보관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변경사항 중 당초금액에 비해 증감액이 20%를 초과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변경안이 <표1>과 같이 존재합니다.

<표1>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증감비율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9,314	13,910	4,596	49%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109,127	187,546	78,419	72%
2021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9,389	14,688	5,299	56%
2021년도 문화진흥기금	3,574	4,372	798	22%

해당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이나, 전산상의 집계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변경금액의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당초의 기금사용액에 대하여 적합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사용처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경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의 집계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수기로 변경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운용의 변경에 대하여 관리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전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확한 기금운용계획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4) 중소벤처기업 펀드투자

1) 현황 및 문제점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내역 중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8,967백만원이며, 지금까지 부산시는 602억원을 출자하여 총 33개 펀드 5,326.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5개 조합이 청산을 완료하였으며, 부산시 출자금 51억원에 대해 65.65억원을 회수하여 128.7%의 회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목적상 부산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신탁하는 것은 기금의 관리 목적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의 재원은 목적접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필요시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기간수익을 발생하는 등으로 보호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현행 투자펀드에 불입하고 있는 상품별로 투자내역(채권 및 주식 등) 및 부산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여부를 면밀히 확인,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공무원 등 퇴직연금 도입 적극 검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의 재무제표 상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가 394억 6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말합니다.

부산시의 2021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912명)	기타특별회계 (113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189명)	계(1,214명)
퇴직급여충당부채	23,802	1,764	13,917	39,483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18)	-	-	(18)
차감잔액	2,3784	1,764	13,917	39,465

2021년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 전원이 퇴사하였다면 394억 83백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2021년말 현재 퇴직금 전환금 및 예치금 등은 17백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약 0.0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부산시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공무원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 중 편리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낮은 세율 적용으로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부산시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비용을 미리 적립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현재 편성하지 못하여 사장되는 예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과에서는 총괄하여 공무원 등 인사계약시 및 단체협약시에 퇴직연금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청의 결산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의 향후 소송전망에 따라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사건의 배상금 지급예정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진행중인 소송사건 중 해당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부채 계상시 보고기간종료일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이었으나 결산보고서 확정일 이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로 인하여 지급 확정된 배상금액을 소송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일부패소에 따른 배상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전액 소송부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 성과지표 달성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1회계연도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을 세웠으며, 32개의 전략목표-234개의 정책사업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234개의 정책사업목표에 44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성과달성도를 총괄하면 달성 339건, 초과달성 67건, 미달성 39건으로 요약 됩니다. 미달성한 성과를 일부 보고한 부서 가운데는 전년대비 정책사업 결산액이 증가한 실, 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도시계획국, 건축 주택국, 문화체육국, 여성가족국, 시민건강국, 행정자치국, 교통국, 민생노동 정책관, 산업통상국, 청년산학창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 녹색환경정책실, 물정책국,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소방재난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검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며 정책사업과 재정 지출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1)성과지표가 당해 정책 사업목표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2)지속적,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측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으로 성과지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실제 사용되는 지표가 전체사업에서 극히 일부의 성과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없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특별한 노력 없이 사업 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다수 발견되었고, 작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나 당기목표수준을 전기수준으로 과소하게 설정하여 초과달성한 부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여 안이한 목표설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를 “달성”으로 보고한 사업 가운데는 목표치 설정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1)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한 경우 2)비율로 설정하는 실적 측정에 있어 분모가 되는 수치를 낮게 설정하여 실적치가 목표 이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경우 3)사업계획서에 설정한 목표치를 사업 진행 중에 수정하여 실적이 높게 표현되도록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성과실적치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성과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과 전년도 실적치와 동일하게 당해 실적치가 표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일치될 수도 있으나, 일부는 성과보고서 작성시까지 실적치가 나오지 않아 유사한 수치 또는 목표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목표치만큼 표시하고, 달성률을 100%인식한 사항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치와 다르게 표시하여 달성률이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한 사항도 발견되었습니다.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 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어 사후에 적절히 확인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과분석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며,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원인 관계를 확인한 결과 원인이 적절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표1〉 성과지표 달성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32	234	445	67	339	39	14,695,900	13,699,615	996,285
시의회사무처	1	1	3	1	2	0	16,299	16,494	-194
감사위원회	1	3	7	2	4	1	1,075	864	210
자치경찰위원회	1	2	5	2	3	0	936	-	936
대변인	1	4	4	0	4	0	14,180	13,437	743
기획관	1	8	13	2	11	0	18,290	22,791	- 4,501
기획조정실	1	5	10	2	8	0	1,604,148	1,457,055	147,092
시민안전실	1	6	13	2	11	0	179,286	145,994	33,292
도시균형발전실	1	7	12	1	11	0	306,985	134,944	172,041
도시계획국	1	7	18	5	11	2	411,403	641,537	- 230,134
건축주택국	1	7	14	2	11	1	245,915	222,343	23,572
문화체육국	1	11	27	5	16	6	394,920	347,419	47,501
사회복지국	1	6	10	3	7	0	5,122,289	5,203,241	- 80,952
여성가족국	1	11	25	6	14	5	981,224	1,086,995	- 105,771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시민건강국	1	4	11	3	6	2	220,391	-	220,391
행정자치국	1	10	20	2	16	2	147,270	1,143,778	- 996,509
부울경특별자치단 체합동사무국	1	1	1	0	1	0	635	-	635
교통국	1	17	26	1	22	3	2,005,492	1,145,349	860,142
민생노동정책관	1	6	9	2	5	2	222,075	180,585	41,490
디지털경제혁신실	1	16	32	8	24	0	207,833	253,019	- 45,185
산업통상국	1	13	21	1	17	3	214,980	241,684	- 26,704
청년산학창업국	1	13	18	2	15	1	939,934	45,660	894,275
관광마이스산업국	1	10	18	3	13	2	68,680	55,894	12,786
녹색환경정책실	1	15	24	4	18	2	378,142	262,129	116,013
물정책국	1	7	11	0	10	1	44,471	48,491	- 4,021
해양농수산국	1	16	33	3	28	2	167,680	321,853	- 154,173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2	1	8,029	2,285	5,744
소방재난본부	1	20	42	3	38	1	697,766	640,214	57,552
인재개발원	1	1	2	0	2	0	7,782	7,433	349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20,344	17,297	3,047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17,475	11,324	6,151
건설본부	1	1	2	1	1	0	10,548	11,415	- 867
낙동강관리본부	1	2	5	1	2	2	19,423	18,091	1,332

2)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작성기준”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사업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은 물론 예산의 크기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

목표와 무관한 지표가 설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를 사용할 때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족도 설문조사 시 표본 선정이 모집단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조사가 설계되어야 하며 설문조사자는 객관성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조사 설계에도 불구하고 표본에 한계가 있다면, 조사결과를 성과달성도 측정에 사용할 때 상응하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나 중장기 계획, 유사사업, 전국수준에 비추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목표치 설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실적치를 목표치 만큼 표시하고, 차후년도에도 유사한 목표치 만큼만 잡아 전기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되도록 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실제 달성을 하였는지, 목표치를 실제치로 수정하여 작성되지 않았는지,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되고 있지 않으므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운영 및 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여 각 실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 검토를 수행하거나, 각 실국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6. 기타 사항

(1) 결산서의 세입.세출 각 과목별 금액이 2021년말 최종 예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불가

1) 현황 및 문제점

결산서와 최종예산서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이 참고할 수 있는 2021 마지막 예산서는 2021.12.14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서로, 추경에서 변경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서와 예산서 대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는 예산부서에서 최종 추경 후 전체 예산과목이 기재된 최종 2021년 예산서를 만들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조하려면 최초 예산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등 총 4권을 번갈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가) 결산검사 전에 최종예산서 보완 작성 필요

연도 말에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과목이 기재된 최종 예산서를 제작하여 의회(전체 의원)에 제출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최종예산액만 기재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2020결산액, 2021최초예산액,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2021최종예산액.(추경은 증감액을 +, - 로 표기.)을 같이 기재합니다.

효율적인 결산검사나 의회의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표기된 최종예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면 행안부에 시스템 개선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곧 이어 진행되는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시 예산과목별 최종예산액을 대조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산 편성흐름도 쉽게 볼 수 있고, 적정 여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현재까지의 관례는 외부에서 대사 확인이 어렵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담당자 일시 부재, 집계 어려움, 기간 촉박 등의 이유를 들고 있고, 그래서 충실한 자료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 다음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도 항목 추가 필요

2022년 말에 제출하는 2023년 예산안에는 2021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2022년 최종 추경예산안 금액(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됐지만 대부분 통과되므로)을 선반영한 2022년 최종예상 예산액(E), 2023년 예산안, 결산 대비 증감액/율, E 대비 증감액/율을 기재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현재의 예산안 제출 책자는 전년도 예산, 당년도 예산안만을 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최근 주요 변동 수치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산액, 추경액을 포함하는 최종예산 금액들을 표시해야 예산심사 시 최근 예산의 실질 흐름을 볼 수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과 의회를 대하는 부산시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는 효율적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예산안 심사 등에 꼭 필요하니 반드시 이행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2) 결산검사 자료의 엑셀파일 조기 제출

1) 현황 및 문제점

결산검사 책자 자료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은 인적, 물리적 시간 제한으로 불가능하고 정확하기도 어렵습니다. 2회 이상 선임된 결사 검사 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 엑셀 자료를 받지 못했고, 결산 검사에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전체 엑셀 파일 자료 조기 제출을 요구하였고, 3일 차에 엑셀 파일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향후에는 결산 검사 첫날에 각 위원에게 각 결산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특별회계 관리의 부적정성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는 16개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2개가 있고, 공기업에서 별도 운영하고 별도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결산서(1) 24P ~ 27P에서는 개별 특별회계마다 구분해서 요약 서술하였고, 30P 기타특별회계 세입, 34P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특별회계별로 총괄 집계하지 않고, 성격별(공공질서, 문화관광, 사회복지 ... 등)로 8개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16개 특별회계를 총괄 집계한 총괄표가 없으므로 16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이월액, 지출액, 지출잔액, 반납금, 예비비 등의 총계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결산서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결산서(1)권 751P ~ 954P에 표시되어 있는 위 각 항목 중 지출잔액 681억, 예비비 433억, 이월액 608억을 합계해보면 1,722억원으로 현 통장잔고인 1,259억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출액, 예비비, 이월액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빌려준) 금액이 있는데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1> 특별회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가)	예산현액 (나)	지 출 액 (①)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①/가	①/나
계	2,490,784	2,547,853	2,418,504	60,753 (4,800)	529 (△523)	68,067	97.1	94.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4,412	24,412	23,161			1,251	94.9	94.9
경 료 사 업	21,021	21,021	21,021				100.0	100.0
의 료 급 여 기 금	1,037,198	1,037,198	1,033,695			3,503	99.7	99.7
교 통 사 업	114,377	115,961	99,597	8,977		7,387	87.1	85.9
광 역 교 통 시 설	22,101	39,114	15,161	15,266		8,687	68.6	38.8
공영차고지조성사업	6,733	10,453	3,115	7,282		56	46.3	29.8
도 시 철 도 사 업	720,952	722,952	708,120	8,934	523	5,375	98.2	97.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 설 대 지 보 상	8,856	36,266	31,657	4,474		135	357.5	87.3
유 료 도 로	35,378	35,429	33,645			1,784	95.1	95.0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33,937	33,937	26,888	1,311		5,738	79.2	79.2
재 정 비 축 진	20,717	20,717	18,000			2,717	86.9	86.9
기반시설부담구역	617	617	400			217	64.8	64.8
화력발전지역개발	1,805	1,814	1,786			28	98.9	98.5
소 방 사 업	383,162	388,443	368,218	14,509	6	5,710	96.1	94.8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7,975	37,975	12,500			25,475	32.9	32.9
국 민 주 택 사 업	21,543	21,544	21,540			4	100.0	100.0

※ 다음연도 이월액()내 금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

※ 보조금 반납금()내 금액은 교부차액금으로 보조금실제반납금은 6백만원임.

부산시는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일시 전출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수시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이의 누적금액은 결산서류에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적금액은 2021년말 현재 1,195억원입니다. 이것은 공식적 채무 외에 숨겨진 채무이고 이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내부결재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표2〉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누적 전출금

(단위:천원)

특별회계명	특별->일반회계 전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500,000
경륜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	
교통사업	5,400,000
광역교통시설	5,500,000
공영차고지조성사업	2,500,000
도시철도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	600,000
유료도로특별	10,500,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	5,500,000
재정비축진	20,000,000
기반시설부담구역	3,000,000
화력발전지역개발	
소방사업	
학교용지부담금	40,000,000
국민주택사업	
16개 특별회계 합계	94,500,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
18개 특별회계 합계	119,500,000

이것은 회계의 투명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부산시는 행안부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 운용을 명백히 공개하지 않고, 별도로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가) 특별회계별 전출금 표시

기금에서의 권고사항과 마찬가지로 각 특별회계별로, 또 총괄금액으로 누적 전출금액, 즉 빌려간 총 금액을 결산서에 명시하여 표기하기 바랍니다. 현재처럼 예산부서의 내부결재로 따로 비공개로 캐비닛에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나) 행정안전부 훈령 개정 건의

정부에 행안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실상의 채무, 즉, 내부거래를 이용한 채무를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누적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채무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4) 기금 관리의 부적정성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는 17개의 개별기금과 1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보관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2)권 9P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재정리.)

<표1> 2021회계년도 결산서(2)권 9P 기금조성내역서,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기금명	연도말 조성액	21.12.31 예금잔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보관	차액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2,290,156	1,334,156	30,956,000	-29,621,844
중소기업육성기금	162,522,269	18,705,269	143,817,000	-125,111,731
투자진흥기금	156,229,090	15,839,090	140,390,000	-124,550,910
남북교류협력기금	9,397,332	2,723,332	6,674,000	-3,950,668
자활기금	10,245,866	2,312,866	7,933,000	-5,620,134
식품진흥기금	14,620,676	3,620,676	11,000,000	-7,379,324
환경보전기금	14,917,834	2,217,834	12,700,000	-10,482,1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83,767,738	24,588,738	159,179,000	-134,590,262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86,251,311	12,725,311	73,526,000	-60,800,689
문화진흥기금	104,776,384	44,632,384	60,144,000	-15,511,616
체육진흥기금	56,203,897	5,245,897	50,958,000	-45,712,103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049,763	1,049,763		잔고일치
재해구호기금	38,142,266	38,142,266		잔고일치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기금	920,759	920,759		잔고일치
재난관리기금	80,170,843	80,170,843		잔고일치
지역개발기금	76,977,164	76,977,164		잔고일치
관광마이스육성 진흥기금	921,597	921,597		잔고일치
17개 기금 소계	1,029,404,945	332,127,945	697,27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9,079	2,509,079	-694,767,921	현금부족분
18개 기금 합계	1,031,914,024	334,637,024	2,509,079	

20201 회계연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1조 319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6개 기금은 조성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였고, 11개 기금은 조성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잔고로 확인된 금액은 3,346억원(결산서(2)권 3P)이며, 6,973억원이 17개 기금 통장에 없었습니다. 이 6,973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확인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는 25억원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보고는 결산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현금 부족분 6,973억원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출, 즉 빌려줬다고 말하고 있으나, 결산서 일반회계 그 어디에도 6,973억원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회계부서에서 내부결재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항 마지막에 있는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6,973억원은 전체 기금 1조319억원의 67%로서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공식적 채무 외에 숨겨진 채무로서 부산시 재정에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에 맞지 않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그러므로, 향후에는 결산서 상에 이 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결산서(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의 기금보관상황 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항목에 통장잔고 3,346억원, 일반회계로 전출(빌려줌) 6,948억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누구나 이 금액과 상황을 알 수 있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표2〉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누적 전출액(빌려준 돈)

2017년	6,337억
2018년	7,021억
2019년	7,488억
2020년	7,343억
2021년	6,973억

부산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각 기금에서 빌려 쓴 6,973억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가급적 빨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특별회계 1,195억원을 합하면 8,167억원이 숨겨진 채무입니다.

부산시는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매년 2천억원 가량을 상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매년 다시 비슷한 금액을 다시 빌려가서 사실상 총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상환금액은 2,040억원이나, 다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간 금액은 1,670억원으로 실제로는 370억원 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2021년은 국비 지원 증가, 취득세 초과세입 등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남아있는 채무 6,948억원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거나, 시민에게 나중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런 기금의 전출 사용은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하지만, 사실상은 숨겨진 채무의 증가라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5) 기금 이자수입관리의 부적정성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18개 기금 이자수입 계획액은 354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6억원으로, 69.5%의 아주 저조한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오류액이 108억원이나 됩니다. (결산서(2) P12, P17)

18개 기금 중 15개의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부산시는 공공예탁금 이자수입은 부산시 금고(부산은행, 국민은행)로부터 받는 협력비를 이유로 이자가 낮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계획액을 무성의하게 잡고 있고, 달성율이 낮아도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가) 신중한 이자수입 계획 수립

이자 수입 계획액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예측오류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총괄부서 역할 증대

부서별로 기금, 기금 이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총괄 부서의 역할 증대가 요구됩니다.

다) 향후 금고 선정 시 제도 개선 및 계약보완 검토

- 금고 계약기간 현 4년에서 2년 정도로 개선 건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시에도 단서 조항을 넣어서 협력비와 이자의 합계가 일반 시중금리 적용액보다 적을 시 그 이상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6) 채무관리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결산서(2) 331P 채무관리보고서에 보면 2020년말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조 9,210억원이며, 2021년말 채무는 3조2,275억원으로 2021년 한 해에 3,065억원,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기금에서 빌려 쓴 6,948억원,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1,195억원, 합계 8,143억이 숨어 있는 채무입니다.(기금, 특별회계 부분 의견서 참조)

이들을 합하면 2021년말 현재, 부산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4조 418억원으로 우리 부산의 경제상황, 시민경제를 생각하면 너무나 과다한 액수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시장과 공무원은 이런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 채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예산절약이 시급합니다.

(7) 취득세 세입목표 상향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해마다 취득세는 과다하게 초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표> 취득세 결산액, 목표액, 징수액, 초과징수액

(단위:억원)

구분	2019	2020	2021
결산액	12,396	18,839	19,397
목표액	11,820	16,354	18,453
초과징수액	576	2,485	944

2021년의 경우 목표액 대비 944억원(5.1%)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2021년 취득세 목표액 설정 당시인 2020년 11월 당시 향후 큰 폭의 세제 감면 정책이 없었고, 오히려 취득세 증세가 예상되었으므로 최소한 2020년 12월 중순경에 추정 집계한 징수액보다 높게 2021년 목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결산액 1조8,839억원보다 적은 1조8,453억원을 2021년 목표로 설정하여 다시 944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2022. 12월 의회 예결특위의 2023년 예산 심사 때에는 12월 중순에 보다 정확한 2022년 취득세 추정을 하고, 이것 이상으로 2023년 목표를 예결특위에서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조치결과 보고 부실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의 2021년 위 책자 제목이 조치결과 보고가 아니라 ‘조치계획’으로 제출되어 있고 이것만 봐도 형식적인 조치가 드러납니다.

책자의 내용 43P 중 27P는 조치계획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마지막 17P만 조치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조치계획과 조치 결과가 같아 중복, 반복,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 행정업무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의견서에 대한 무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의 개선 여부는 의회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사항 별 해당 실·국·과 별로 조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9)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총괄 결과보고 늦어 결산에 지장

1)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회계 만료 후 정산을 하고, 결산 시점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8조)

하지만,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검사 시점에서 전출금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결산검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출연금 정산을 2020회계연도에 시행한 실적이 있고, 정산결과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2020회계연도 부산시 지방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공기관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억원, %)

과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월액
합계	6,202	5,848	407	68	359	130
출연금	824	897	34	1	28	4
전출금	2,438	2,294	144	14	155	0
위탁사업비	2,938	2,657	229	53	176	126
비중(%)	100.0%	92.8%	6.3%	1.0%	5.6%	2.0%

이 때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실·국별 전출금 정산에 대한 총괄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정혁신 담당관실에서 정산금 서식을 제시했음에도 일부 실·국에는 예산편성과목별이 아닌 전체 세출과목을 통합하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첫째, 전출금의 정산시기를 앞당겨 결산검사 시점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전출금 정산의 총량에 대한 재정 및 회계정보를 알 수 있도록 총괄자료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총괄자료를 결산검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